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대상 추가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981호)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490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한정애의원안 (의안번호 제2214981호)	1
2. 홍기원의의원안 (의안번호 제2215490호)	2
III . 검토의견	3
1. 무자력 정의 신설 및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제도 정비	3
1) 무자력 판단 기준의 구체화	12
2)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대상 추가	16
3) 선지급 절차상 역할 명확화	20
2. 부칙(시행일)	23

I. 제안경위

1. 한정애의원안 (의안번호 제2214981호)

가.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12월 8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9일

2. 홍기원의의원안 (의안번호 제2215490호)

가. 제 안 자 : 홍기원의의원 등 13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12월 22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한정애의원안 (의안번호 제2214981호)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 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3. 홍기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215490호)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무자력 정의 신설 및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제도 정비

개정안은 영사조력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무자력’의 판단 기준을 금융정보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무자력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영사조력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영사조력 비용을 선지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해당 비용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지체 없이 집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 ----- ----- ----- -----. ----- ----- ----- ----- ----- -----.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 ----- ----- ----- -----. ----- ----- ----- ----- ----- -----.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u>무자력(無資力)</u>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u>무자력[제1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확인한 자산총액(「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생계비 액수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u>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③ 외교부장관은 <u>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③ 외교부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u> 1. <u>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외국민</u> 2. <u>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u>	③ 외교부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u> 1. <u>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재외국민</u> 2. <u>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u>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u><신설></u>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u>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u>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전달받은 비용을 지체 없이 대신하여 지급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외교부 의견

외교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지급 대상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자력 여부는 외교부장관이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한정애의원안의 관련 표현은 현행 제도 및 실무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같은 조 제4항 신설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과 실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이 오히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제도 현황

1) 영사조력 비용 부담 및 선지급 제도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19조는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부담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①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②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해당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상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외공관의 최근 3년간 긴급지원비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21건, 2024년 37건, 2025년 상반기 19건이고, 지급된 긴급지원비는 최소 3만 6천원('24)부터 최대 2,988만원('25)까지 다양함.

< 재외공관의 긴급지원비 지급 사례(연도별 최소/최대) >

신청월	관할공관	신청내용	심사일수 (공문기준)	지원비용 (천원)	비고
2023.1월	000대사관	귀국지원비	3	146	2023년 최소 금액
2023.4월	000총영사관	치료비 및 귀국지원비	132	6,974	2023년 최대 금액
2024.3월	000대사관	치료비	47	25,297	2024년 최대 금액
2024.10월	000총영사관	현지 교통비	6	36	2024년 최소 금액
2025.1월	000출장소	치료비	34	29,880	2025년 상반기 최대 금액
2025.2월	000대사관	송환 전 숙식비	65	153	2025년 상반기 최소 금액

※자료: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2026.01.22.) 제출자료 재구성

2) 긴급지원비 운영 및 무자력 판단 절차

영사조력 비용 중 긴급지원비의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¹⁾ 및 외교부 예규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의 신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교부장관이 근로능력 여부, 금융재산 규모,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외국민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우선 긴급지원비를 지원한 후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5년 3월 신설된 긴급지원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자력 여부 확인 전이더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파악이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3.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6조(심의위원회) ①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5,000만원 초과 긴급의료비 지원

이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무자력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외공관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선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음.

한편, 무자력 여부의 판단은 영사조력법 제21조³⁾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외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활용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긴급지원비 심사기간은 42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임.

2. 5,000만원 초과 긴급환자 국내송환비 지원

3. 긴급성으로 인해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이 파악될 때까지 기다릴 실익이 없다고 위원장 또는 간사가 인정한 경우

② 위원회는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영사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재외국민보호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외의 다른 공무원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⑦ (생략)

⑧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하려는 경우 재외국민이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외국민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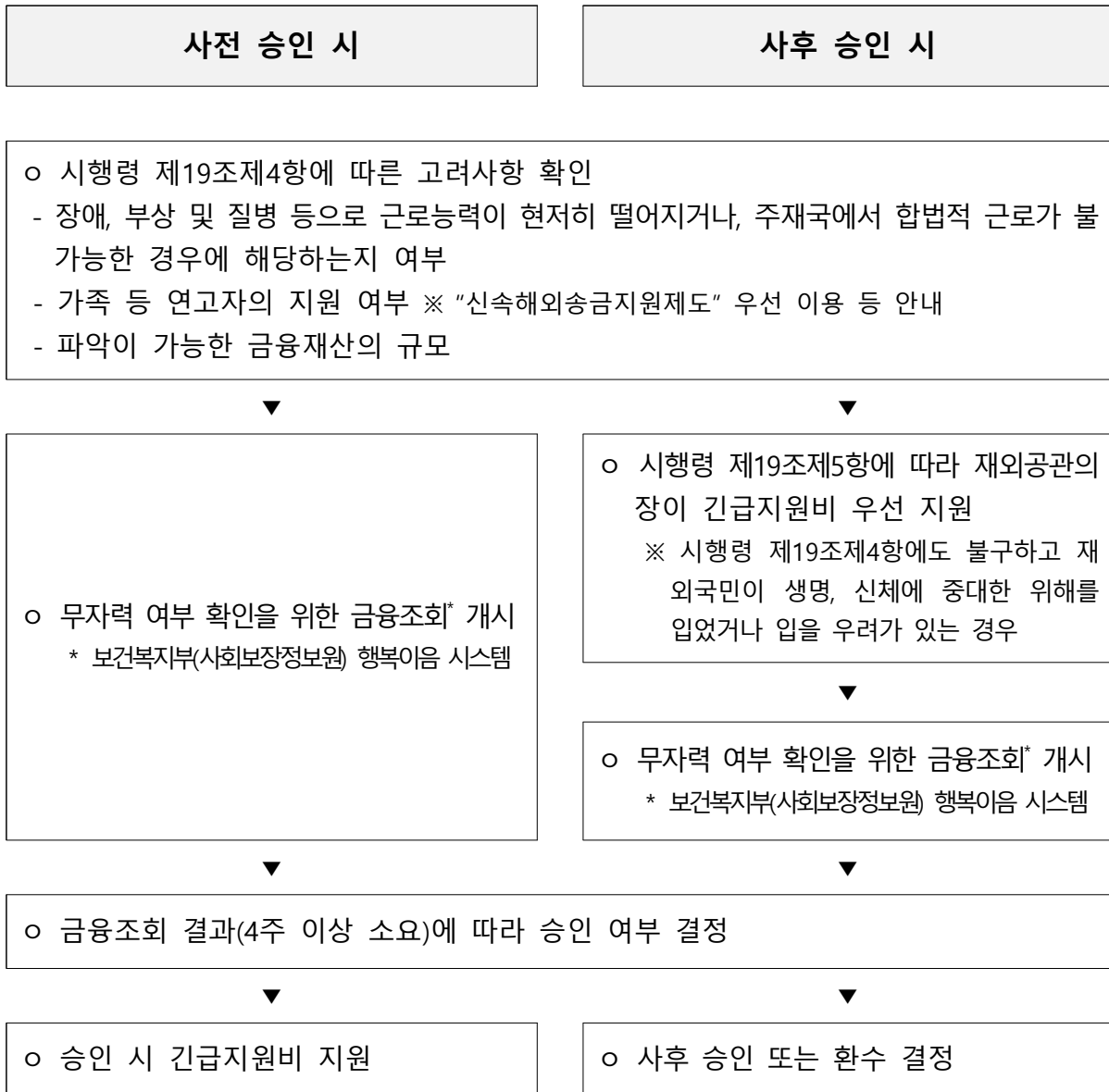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⑥ (생략)

< 긴급지원비 지급의 세부 절차 >



※자료: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2026.01.14.)

다. 검토의견

1) 무자력 판단 기준의 구체화

개정안은 영사조력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무자력’의 의미를 재외국민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현행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자력 판단 기준을 법률에 직접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한정애의원안 제19조제1항제1호).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 ----- ----- ----- ----- ----- ----- ----- ----- -----.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 ----- ----- ----- ----- ----- ----- ----- ----- -----.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제1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확인한 자산총액(「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1. (현행과 같음)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u>따른 생계비 액수를 제외한다</u>)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제도하에서는 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무자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외교부 예규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위임되어 있음.

동 지침 제2조제4호4)에 따르면, 무자력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금융조회 결과 확인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합계액에서

4)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 예규)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비”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 제19조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사조력과정에서 드는 비용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는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무자력(無資力)”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긴급지원비 신청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5.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사건·사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사건·사고가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재외국민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 다. 상기 각목에 준하여 외교부장관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민사집행법」⁵⁾상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긴급지원비 신청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무자력의 의미를,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영사조력 비용이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자산총액(민사집행법상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구조와 기준에 있어 현행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무자력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하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영사조력 비용의 국가 부담 여부 및 선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 16. (생략)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7. (생략)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송배에 필요한 물건

② ~ ④ (생략)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특히 금융조회 결과와 생계비 공제라는 구체적 요소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간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재외국민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예측가능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이와 같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법률에 반영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대상 추가

개정안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무자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재외국민을 선지급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한정애·홍기원의원안 제19조제3항).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③ 외교부장관은 <u>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u>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③ 외교부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u>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③ 외교부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u>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의원안
<신설>	1. 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결정 되지 아니한 재외국 민	1. 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 중에 있 는 재외국민
<신설>	2. 제1항 단서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재외 국민으로서 해외위 난상황으로부터 안 전한 지역으로 이동 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2. 제1항 단서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재외 국민으로서 해외위 난상황으로부터 안 전한 지역으로 이동 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④ 외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상환의무자 가 해당 금액을 상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상환의무자 가 해당 금액을 상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행 영사조력법 제19조제3항은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자력 여부 판단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의 선지급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⁶⁾되어 왔음.

6) 외교부에 대한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10.28.) 시 홍기원 의원이 직원 사비 집행 문제 해결 및 긴급지원비 적극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 필요성 제기한 바 있음

실무상으로는 시행령 및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라 재외공관이 우선 지원한 후 사후 승인 및 환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무자력 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시급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지급 대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용 실태를 반영하고 재외공관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한정의원안은 선지급 대상 중 하나로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홍기원의원안은 이를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재외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무자력자 여부는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선지급 대상의 명확성과 법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자력 판단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홍기원의원안과 같이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재외국민’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은 선지급 이후 사후 심사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오지급 상황 발생 시에도 외교부가 부담하게 될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볼 때, 개정안은 해외위난상황에서의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선지급 절차상 역할 명확화

개정안은 영사조력 비용을 선지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해당 비용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지체 없이 집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홍기원의원안 제19조제4항).

현행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u><신설></u>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전달받은 비용을 지체 없이 대신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용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관 단계에서의 법적 불확실성과 집행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긴급지원비의 기본적인 절차는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장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면, 외교부장관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비용을 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즉, 통상적으로는 ‘재외공관 신청 → 외교부장관 승인 → 예산 배정·전달 → 재외공관 집행’의 절차가 기본 틀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재외국민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무상으로도 긴급 상황에서는 재외공관이 우선 비용을 입체(立替) 지불⁷⁾한 후 사후에 외교부 본부로부터 정산·보전받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즉각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처럼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 후 집행 구조를

7) ‘입체지불(Disbursement)’은 무역 및 물류 특히 항공화물 운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본래 지불해야 할 사람(수하인)을 대신하여 송하인(수출자)이나 운송인(포워더)이 선지불한 부대비용을 수하인(수입자)에게 나중에 징구하는 것을 의미함. 외교부는 이를 해외위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후, 사후에 외교부 본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전받는 집행 방식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음.

취하면서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우선 지원하고 사후 승인받는 방식이나, 입체지불 후 사후 정산 방식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안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에서의 이동수단 투입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기 등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포함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집행 형태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여 현행의 유연한 실무 운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이 현행 제도는 사안의 긴급성 및 유형에 따라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간 역할 분담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비용 전달 및 집행 절차를 단일한 방식으로 법률에 고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현행 집행 구조와의 정합성 및 해외위난 상황에서 요구되는 신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부칙(시행일)

한정애의원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홍기원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한정애의원안	홍기원의원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의 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외교부 의견

외교부는 개정안의 취지가 해외위난상황 등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는 만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대상의 확대, 무자력 판단 기준의 명확화 등 제도의 운영 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나, 이는 현행 시행령 및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등을 통하여 운영 중인 제도의 내용을 상당 부분 법률로 상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문언 정비 및 절차 명확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3